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자금세탁 위험과 대책
Money Laundering Risk and Countermeasure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자금세탁 위험과 대책
Money Laundering Risk and Countermeasure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정 응

목 차

I. 서 론

II. 국제금융의 변화와 탈법위험

1. 국제금융거래의 위험-비용 매트릭스
2.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추이와 탈법위험

III.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동향

1. 국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관
2.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IV. 자금세탁의 실태와 대책

1. 자금세탁의 유형과 실태
2. 제도적 대응방향

V. 결 론

참고문헌

1. 서론

국제금융시장은 세계적인 통합 경향이 가속화되고 시장간 장벽이 낮아지고 있으며 금융시장 내에 거래되는 자본의 규모나 참여국가, 그리고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더 나아가 국제금융거래는 그 시장범주 면에서 외환시장의 통합과 확대, 유로(euro) 시장의 활성화, 역외금융시장의 신장, 파생금융시장의 성장 등의 변화를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거래경향과 방식에서도 증권화의 심화, 금융겸업화의 증대, 전자금융의 급속한 확산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¹⁾

국제금융시장의 발전은 기업자금조달 및 투자기회확대, 거래비용감소와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산업발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 반면,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의한 국제수지 악화, 환율 불안정, 통화량 확대에 따른 물가불안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배태하기도 한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탈법행위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자금세탁을 비롯한 각종 탈법위험을 최소화하고 불법금융거래를 차단해야 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추세와 위험양상은 최근 국제적 통상환경변화와도 맞물려 크게 증폭되고 있다. 즉 FTA에 따른 국가간 무역장벽 감소, 역내국의 경제성장 등에 힘입어 전 세계 무역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결국 국제금융시장 자체의 확대 외에도 무역자유화에 편승한 불법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위험성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와 자유무역의 조류에서 비껴나 있지 않다. 우리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개방 확대

1) 이 글의 주요 내용은 한국무역보험학회 국제학술회(2011. 6. 17)에서 발표된 바 있음.

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국제금융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외환자유화 추진(2002-2011)을 계획한 바 있으며, 또한 2003년 이래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외환자유화 조치와 FTA 추진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금융시장의 변화와 그에 수반된 국제금융거래상 각종 불법거래, 특히 자금세탁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와 무역 자유화과정에서 야기된 탈법위험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불법금융거래의 방지책 필요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추이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동향을 살펴보고 불법자금세탁의 차단을 위한 제도적 대응과제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법과 제도(law and institution)의 정비 여하에 따라 불법금융거래를 억제(deterrence)하고 금융시장의 성과(performance)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신제도주의 접근시각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신제도주의 이론에 의할 때, 한 시스템의 성과는 신고전주의적 생산함수 이외에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존재가 고려된 제도 및 그 행위자로서의 조직의 함수이기도 하며²⁾, 제도적·조직적 변수의 성공적 선택 여부에 따라 시스템의 성과가 크게 달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본 연구는 비공식적 제약(informal constraints)을 포괄한 North 類의 넓은 의미의 제도 범주 보다는 법제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념에서 출발하여, 자금세탁방지 법제도와 불법사례를 분석하고 불법자금세탁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D. C. North,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Oliver E. Williamson,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New York: Free Press, 1985; T. Eggertsson, *Economic Behavior and Instit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II. 국제금융의 변화와 탈법위험

1. 국제금융거래의 위험-비용 매트릭스

국제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거래자유화와 자유화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탈법위험의 억제 문제는 어떠한 틀에서 분석될 수 있는가? 효율적인 국제금융시장의 운용은 금융거래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법 규정의 명확화와 그 준수여부의 확인을 위한 제반 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무역거래에서 자유무역과 무역원활화가 과도하게 추구될 경우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교역물품의 통관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과 같이, 국제금융거래 자유화과정에서도 역시 법규정을 벗어난 자금 세탁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거래자유화 못지않게 거래질서의 유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그것은 거래비용 최소화(효율성) 외에도 불법위험의 최소화(효과성)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효율성 외에도 효과성을 고려하여 두 가지를 조화롭게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국제금융거래 제도와 통제절차를 염두해 두면서 국제금융거래를 분석하는 시각이 요구된다.

경제개방과 지역통합의 가속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국제금융거래의 세계화·자유화 추세 아래 국제금융에서 거래비용 최소화는 자금세탁위험 최소화와 함께 조화롭게 달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 목표는 <그림 1>과 같이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림 1> 국제금융거래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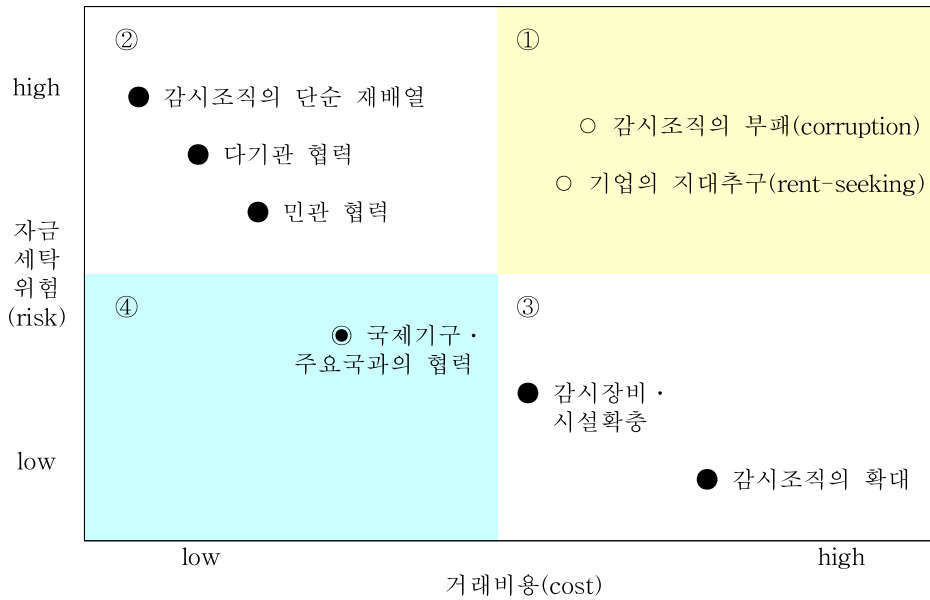
거래비용 최소화	불법위험 최소화
금융거래에서 소요비용의 최소화 ▶ 효율성 확보	금융거래에서 불법자금세탁의 최소화 ▶ 효과성 확보

거래비용 최소화는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그 극대화는 금융거래에서 지체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불법위험의 최소화는 효과성을 달성하는 것이며, 그 극대화는 법률에 규정된 자금세탁행위 억제라는 법익을 완전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현 국제금융시장과 제도운용의 상황을 이와 같은 거래비용과 불법위험 최소화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어떠한 정책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 <그림 2>와 같은 매트릭스(matrix)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위험-비용 최소화(minimization of risk and cost) 매트릭스에서 횡축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최소화 달성 정도이다.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왼쪽에 위치할수록 적게 발생함을 의미한다. 종축은 불법위험(illegal risk) 최소화의 달성 정도이다. 위쪽으로 위치할수록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아지고, 아래쪽으로 위치할수록 위험도가 낮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그림 2>의 매트릭스 위에는 여러 종류의 시행 가능한 대안들 즉, 자금세탁 감시조직의 단순 재배치 또는 재배열(rearrangement), 조사·감시기관간의 협력으로서 다기관간 협력(multi-agency partnership), 민관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감시장비·시설 확충(inspection equipment/facilities enrichment), 감시조직의 확대(inspection organization enlargement) 등이 기대비용과 기대위험의 수준별로 설정되어 있다.

<그림 2>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위험-비용 매트릭스



<그림 2>에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거래비용 최소화과 위험 최소화 수준이 높은 ④분면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자금세탁위험은 낮으나 거래비용이 높은 ③분면의 경우에는 거래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안(design)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불법위험은 높으나 거래비용 수준은 낮은 ②분면의 경우에는 불법위험을 낮추는 제도적 대응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①분면은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불법위험이 큰 경우로서 시급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되는 위치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법위험통제에서 기본적인 이해당사자 또는 행위주체(player)는 국내적으로 우리 정부와 금융기관, 금융회사,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기구 및 주요 국가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중 우리 정부가 불

법자금세탁 억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정부 내의 감시조직이 확대될 경우, 혹은 감시장비와 시설이 확충되어 운용될 경우 자금세탁 발생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클 것이다. 반면 조직확대와 장비확충에는 많은 정부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나아가 엄격한 감시과정에서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경우 통제비용은 증가할 것이며 이 경우는 위 <그림 1>의 ③분면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제도라 하더라도 운용 여하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제도주의 시각에서 볼 때, 주인-대리인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에 기초하는 대리인비용(agency cost)의 증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비대칭적 권위관계(asymmetric authority)와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배분 구조 하에 세부적 정보의 점유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피위임자들은 당초 법규에서 정한 공익은 물론 상급자의 조직운영 의도에 반하여 자신들 개인의 사적 이익(self-interest)을 우선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책임의 회피(shirking responsibility), 왜곡(distortion),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역선택(adverse selection) 등으로 나타난다. 정부 감시조직의 경우는 불법금융거래를 차단해야 할 심사·감시 유관부서들의 부패(corruption), 관련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지대추구(rent-seeking)와 같은 양상으로도 진행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제도 성과는 ①분면에 해당한다.

당초 제도의 설계와 운용을 통해 기대했던 높은 효율성 및 성과 확보의 기대와는 달리 이러한 현상이 금융시장에 만연할 경우에는, 단순히 비효율 문제를 넘어 제도 실패(institution failure), 조직 자체의 실패(organization failure)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역으로 여러 대안들의 효율적인 결합과 운용에 따라서는 ④분면과 같은 이상적 위치로 이동할 수도 있다. 즉 당초 정부가 구상했던 자금세탁 억제에 기대수준에 비해, 예산제약으로 조직과 설비확충 등 선택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다기관간 협력, 국제협력 등 여러 제도적

수단들을 탄력적으로 조합함으로써 불법자금세탁위험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도모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추이와 탈법위험

국제금융시장은 외환시장, 파생금융시장, 유로시장, 역외시장 확대 등 시장 자체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시장 내 상품거래양상과 거래방식에서도 증권화 경향의 심화, 금융겸업화 경향의 증대, 전자금융의 급속한 확산 등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 이러한 변화들은 그 속도가 빠르고 변화내용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불법국제금융거래 특히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유관 공공기관들의 선제적 감시와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 외환시장의 성장과 자금세탁

2007년 국제결제은행(BIS)이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³⁾, 세계 외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 등 전통적 외환거래 규모는 2007년 4월중 일평균 거래량을 기준 3조 2,100억 달러로서 2004년 4월(1조 8,800억 달러)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관투자자의 투자수단이 다양화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외환시장 거래규모는 2004년 1조 8,800억 달러, 1998년 1조 4,900억 달러, 1995년의 1조 1,900천억 달러, 1992년의 8,200억 달러를 고려할 때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여 왔음을 알 수 있으며 1989년의 5,900

3) BIS에 의한 동 조사의 공식명칭은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Market Activity로서 그 목적은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모 및 구조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금융시장의 거래행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1989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2007년 조사에는 54개국 2010년에는 53개국 중앙은행이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1998년, 2001년, 2004년, 2007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참여하였다.

천억 달러에 비하면 2007년 세계 외환시장 규모는 5.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표 1>).

<표 1> 세계 외환 및 파생상품시장 거래규모 추이(4월중 일평균 기준)

	단위: 10억 달러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전통적 외환거래1)	590	820	1,190	1,490	1,200	1,880	3,210
장외파생상품거래1)	200	375	575	1,220	2,090
합 계	1,390	1,865	1,775	3,100	5,300
장내파생상품거래	1,221	1,382	2,198	4,547	6,173

주: 1) 조사대상 금융기관간 거래에 따른 이중계산(double-counting)을 제거하고 일부 국가의 포괄범위가 100%가 되지 않는데 따른 누락분(gaps)을 추정·가산한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BIS의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시장 거래규모 조사결과”, 2007. 9. 28.

한편 2007년 4월중 우리나라의 전통적 외환거래규모 역시 일평균 334억달러로 2004년 4월(198억달러)에 비해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2004년 수준을 유지하였다.⁴⁾

BIS는 2010년 4월에도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거래규모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특기할 것은 2007년 조사까지는 전통적 외환시장(현물환+선물환+외환스왑)과 기타 장외파생상품시장(통화스왑+통화옵션+금리파생거래)으로 구분하였으나 2010년 조사부터는 ‘세계 외환시장’과 ‘세계 장외 금리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하여 조사했다는 점이다.⁵⁾

4) 2007년 전통적 외환거래의 국가별 순위는 영국(34.1%), 미국(16.6%), 스위스(6.1%), 일본(6.0%), 싱가포르(5.8%), 홍콩(4.4%) 등의 순이며 우리나라는 54개국 중 18위를 기록하였다. <표 1>의 한국은행(2007. 9. 28) 자료 참조.

5) 2007년 조사까지의 전통적 외환거래와 기타 장외파생상품거래 구분은 시장의 거래 관행(market practice)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를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0년 조사에서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s)은 다시 거래상품별로 현물환거래(Spot transactions)와 기타 외환관련상품(Other related foreign exchange instruments, 선물환+외환스왑+통화스왑+통화옵션)으로 세분된다. 이와 함께 장외 금리파생상품시장(OTC interest rate derivatives markets)을 별도로 파악하여 기타 외환관련상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표 2>의 한국은행(2010. 9. 1) 자료 참조.

이 분류기준에 의한 2010년 4월중 세계 외환시장의 거래규모는 일평균 약 4조 달러로 2007년 4월에 비해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외환시장 거래를 세분하여 보면 현물환 거래(일평균 약 1.5조달러)가 3년전(1조 달러) 대비 48% 증가하였고 기타 외환관련상품 거래(일평균 2.5조 달러)도 3년전(2.3조 달러)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환시장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헤지펀드, 연기금 및 보험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거래가 보다 활발해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세계 외환 및 장외 금리파생상품 시장 거래규모 추이(4월중 일평균 기준)

단위: 10억 달러

	1998	2001	2004	2007	2010
세계 외환시장1)	1,527	1,239	1,934	3,324	3,981
세계 장외 금리파생상품시장1)	265	489	1,025	1,686	2,083

주: 1) 조사대상 금융기관간 대내 및 대외거래의 이중계산(double-counting)을 조정.
 자료: 한국은행, “BIS의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시장 거래규모 조사결과”, 2010. 9. 1.

한편 2010년 4월중 우리나라의 외환거래규모는 일평균 438억달러로 2007년 4월(352억달러)에 비해 24% 증가하여 세계 외환시장의 증가율(20%)을 상회하였다. 그에 따라 세계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0.9%로 3년전(0.8%)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고 국가별 순위(거주성 기준)도 53개국중 13위로 3년전에 비해 5단계 상승하였다.

이처럼 외환시장에서 주목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거래량의 확대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제통합과 교역활성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며, 특히 외환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자유화 조치와 금융시장개방은 이러한 거래확대 경향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외환시장의 자유화에 더하여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남미국가들의 외환시장 불안은 변동환율 제도를 환율정책의 주요

기조로 만들었고 그 결과 세계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외환시장에서 발생한 최근의 또 하나의 대표적 변화의 하나는 유럽국인들이 공동통화로 유로화를 도입한 것이다. 유로화는 달러화 이후 가장 강력한 단일통화의 하나로 부상하였고,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확대됨에 따라 그 거래규모도 지속적으로 팽창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외환시장의 주요 변화는 거래규모의 확대, 환율변동성의 증가, 유로화의 도입으로 요약된다. 금융시장의 세계화와 외환거래의 가속화 속에 그 동안 개별적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일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외환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정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외환거래까지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형 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래주체들의 외환거래도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환거래 규모의 확대와 이동성의 증가는 또한 환율의 변동성을 상승시키게 된다. 이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헤징거래를 증가시키고 환차에 의한 손익을 가장한 자금세탁 등 관련범죄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화의 도입은 외환보유 구성비율의 변동을 필요하게 만들고 유로화 관련 새로운 외환 상품시장을 발달시키며, 특히 유로통화권 자체도 유럽연합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로통화권의 변화는 관련된 외환상품과 제도의 변화를 초래하여, 이러한 변화과정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나. 파생금융시장의 발전과 자금세탁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이란, 통화, 채권, 주식 등의 금융자산의 가치가 환율, 금리, 주가 등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하게 되므로 이로

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되는 미래가치 상품을 뜻한다. 이처럼 파생상품발생 동기는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목적이었으나, 금융기법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가치변동 위험을 거래하게 되어 오히려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규제완화와 세계화에 따른 경쟁격화로 기존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가격의 변동위험이 더욱 커짐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및 취급을 확대하여 거래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파생금융상품거래는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장내거래와 장외거래가 모두 급속히 증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현물거래 규모를 상회하였다. 즉 앞의 <표 1>에서 보듯이 1995년 1조 2,210억 달러였던 장내파생상품(exchange-traded derivatives) 거래액은 2001년에는 2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6조 1,730억 달러로 신장되었다.

또 1995년 2,000억 달러에 불과하던 장외파생상품(over-the-counter derivatives) 거래는 2004년 1조 2,200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2007년에는 다시 일평균 2조 900억 달러를 기록해 2004년 4월 대비 71% 증가하였다. 이러한 2007년 장외파생거래 중에서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은 2,910억 달러로 2004년 대비 110% 증가하였으며 금리관련 장외파생상품은 약 1.7조 달러로 2004년 대비 64% 증가하였다. 이처럼 파생금융시장은 장내거래에서도 급속한 성장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신종상품의 개발이 용이한 장외시장에서 더욱 괄목할 규모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0년 4월중 세계 장외 금리파생상품시장 거래규모는 일평균 약 2.1조 달러로 지난 2007년 4월(약 1.7조 달러) 대비 24% 증가하였다(<표 2>). 또 2010년 4월중 세계 외환시장 거래 중 파생상품과 관련된 '기타 외환관련상품 거래'는 일평균 2.5조 달러로 지난 2007년 4월(2.3조 달러)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4월중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일평균 72억 달러로 2004년 4월(16억달러)에 비해 무려 35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0.3%로 2004년(0.1%)에 비해 0.2% 상승하였다.⁶⁾ 한편 새 분류체계에 의한 2010년 4월중 우리나라의 장외 금리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일평균 107억달러로 2007년 4월(54억달러) 대비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위험 헤지를 위한 금리스왑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세계 장외 금리파생상품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3년전(0.3%)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국가별 순위도 17위로 3년전에 비해 2단계 상승하였다.⁷⁾

파생금융상품이 확대되고 있는 주요 이유로는 파생금융상품이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는 부외거래(off-balance)라는 특징, 파생상품의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 거래의 기동성 및 융통성, 신용위험의 축소, 거래비용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과도한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 기법의 응용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파생금융상품시장이 비판과 후유증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개방의 진전과 함께 거대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 헤지(hedge)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이유로 향후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장기적으로 확대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게 된 주요 이유는 무엇보다 부외거래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인 바,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증대는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는 부외거래의 급격한 확대를 유발하여 유동성의 변동이 통화지표에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게 한다. 그 결과, 거래내용이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의 정보수집 및 분석 자체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근래에 들

6) 2007년 우리나라의 국가별 순위는 19위를 기록하여 3년전인 2004년에 비해(23위) 비해 4단계 상승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외환거래의 비중(0.8%)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한국은행, 2007).
7) <표 2>의 한국은행(2010. 9. 1) 자료 참조.

어 일반적으로 부외거래로 처리하던 파생금융상품을 회계 상에 반영하도록 새로운 회계기준이 제시되었으나 국가별로 아직 정착되지 못한 통일 회계기준을 자금세탁에 이용할 경우 이의 적발이 용이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시장이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게 된 또 다른 특징은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시장의 수요에 따라 각종 특성을 가진 상품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정보통신과 금융공학적 기술의 발달이 신상품의 등장을 더욱 촉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시장에는 신상품이 먼저 생겨나고 그 규제를 위한 감독기관의 제도가 이에 후행하게 되므로 신상품의 등장 초기에 이루어지는 자금세탁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어렵고 자금세탁방지 대책을 세우기는 더욱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들로 파생상품시장은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 있는 기관 및 전문가의 지속적인 주목을 요구하고 있다.

다. 역외금융시장의 확대와 자금세탁

역외금융(off-shore financing)이란 해외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해외 거래처에 대출해주는 금융방식이다. 이러한 역외금융은 비거주자간의 거래만을 뜻하며 거래에 거주자가 개입되는 역내금융(on-shore financing)과 상대되는 특징을 갖는다. 역외금융은 비거주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래통화도 주로 비거주자인 고객의 소속국 통화 또는 세계 주요국의 통화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역외금융은 유로시장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유로금융은 거래가 발생하는 장소의 국가와 거래통화가 다른 금융거래를 지칭하며 거래당사자의 거주여부가 계약체결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 시장인 반면, 역외금융은 비거주자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다른 비거주자에게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역외금융은 흔히 비거주자의 예금을 단지 장부에 기입하게 하여 그 수

수료를 받는 booking center로서의 기능이나 역외자들간 금융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collection center로서의 국제금융센터 등에 의해 많이 활용된다. 전자는 케이맨제도(Cayman Islands), 바하마제도(Bahamas)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며, 후자는 바레인(Bahrain), 두바이(Dubai) 등이 주요 역외금융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종합적인 역외금융시장은 런던, 뉴욕, 도쿄 등 국제적인 금융거래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는 기금을 모아 특정사업에 제공하는 funding center로서의 기능을 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금융센터가 있는가 하면 booking, collection, funding 기능을 모두 갖춘 primary center로서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는 런던이나 뉴욕 같은 금융중심지가 있다. 역외금융을 담당하는 곳들은 비거주자간의 거래를 유치함으로써 자국의 금융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증가 및 수수료 등 부수적인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분 최대한 많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금리규제, 지급준비율, 예금보험 등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면제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 외에도 고용조건이나 설비조건 등을 이러한 업무에 편리하게 제공하고 특별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역외금융시장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내외일치형, 내외분리형 및 조세피난처형으로 구분된다. 내외일치형은 국내시장에서 외환거래나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한 시장으로 국내시장과 세제상 명확한 구분이 없다. 예를 들면, 런던, 홍콩이 대표적인 내외일치형 시장이다. 내외분리형 시장은 자국시장에서의 국제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시장과는 분리하고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시장을 뜻한다. 따라서 우대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제금융거래를 국내거래로 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각 은행이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상 구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뉴욕의 IBF(International Banking Facility), 일본의 JOM(Japan Offshore

Market), 싱가포르의 ACU(Asian Currency Unit) 및 바레인의 OBU(Offshore Banking Unit) 등이 있다. 조세피난처형 시장은 각국의 기업 등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세계상의 특별우대조치를 제공하는 지역에 명목상의 본점을 설치하고 거래의 기장만을 하고 있는 시장으로 실제의 거래가 이루어진고 할 수는 없는 시장이다. 케이맨제도, 바하마제도, 맨도(Isle of Man) 등이 있다.

역외금융시장도 유로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의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중개하여 수수료 소득이나 고용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필요한 자본의 공급에도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자본의 유치를 위해 자본제공자나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역외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역외금융시장은 국내거주자가 참여하는 금융거래가 아니어서 이러한 금융거래에 이윤동기 외에 다른 정치적, 사회적 동기가 반영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역외금융시장에 대한 감시나 감독이 심화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⁸⁾

라. 유로시장의 활성화와 자금세탁

유로시장(Euromarket)이란 국제적인 금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특히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증권이 해당통화 발행국 이외에서 거래되는 시장, 즉 국내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시장을 말한다. 유로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발행국과 표시통화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로시장은 금융당국의 부적절한 통제를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같은 국가의 감독과 규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금융거래의 특성이 유로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금융이노베이션을 가져온 원동력이 되

8) 안형도·윤덕룡,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37-39면.

었고, 각국의 금융자유화와 세계화 추진에도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유로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특정 국가나 국제기구의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 있지만, 더 나아가 유로시장 자체의 특별한 관할기구가 없다는 시장여건에도 있다. 즉 시장 자체가 규율하는 공개의무 등을 회피하려는 자본에게 이러한 시장조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유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금융시장의 세계적 통합추세에 따라 국제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한 지역적 경합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므로, 여러 국가들이 익명의 자본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유로시장에 유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엄격한 통제장치나 자본의 성격에 관한 확인절차 없이 대규모의 자본이 이동할 수 있으므로 유로시장을 통한 자금세탁의 가능성은 어느 시장보다도 높다고 할 것이다.

마. 국제금융시장의 증권화, 겸업화, 전자화와 자금세탁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는 증권형태로 자금이 조달·운용되고 시장매매를 통해 자금이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국제거래 측면에서 볼 때, 은행을 통한 간접적 자본공급은 국가간 금융제도의 장벽이 완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고, 이는 곧 금융의 증권화 경향이 높아지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제금융거래에서 증권부문은 상품의 다양성과 국경에 제약받지 않는 용이한 시장거래 등을 특징하며, 이는 일반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범죄를 통해 만들어진 자금까지도 불법 세탁을 위해 증권시장으로 흘러들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나아가 증권화 경향의 심화는 과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던 여러 자산들을 증권시장의 상품으로 만들고 있는 바, 이러한 특징들은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을 배태하고 있다. 첫째, 부동산을 비롯한 모

든 재산권이 유동화되어 증권화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자금세탁의 형태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자산의 유동화가 재산권의 행사를 더욱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자금세탁이 보다 단기간에 전세계적인 공간에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한편 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에 따른 직접금융과 자산유동화의 심화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서로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의 업무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금융서비스산업은 은행, 증권, 보험으로 나뉘어 있던 전통적인 금융영역구분을 초월하여 은행과 비은행 구분 없이 하나의 금융영역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금융기관의 겸업화(universalization)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형화, 초국적화, 영업범주의 포괄화 등의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변화들은 초국적인 단일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세탁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증권화, 겸업화와 함께 금융거래에서 전자화(electronic finance)는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및 인터넷 금융중개 등의 유형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보기술의 혁신에 따른 전자금융의 발달은 금융시장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열어주고, 나아가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중개화(market-based intermediation) 및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를 촉진하며, 또한 소비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상품 및 거래수단을 제공하는 고객중심화(customization)의 효과를 가져 온다. 이처럼 전자금융은 금융거래에 정보통신기술을 구현함으로써 금융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고객만족도를 높여주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거래가 비대면거래, 저비용, 전세계적 시장접근성 등으로 악용되는 새로운 범죄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⁹⁾ 특히 전자금융의 새로운

기법들은 증권화, 겸업화와 더불어 자금세탁의 대형화, 신속화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III.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동향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란 일반적으로 “재산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¹⁰⁾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도의 범주에는 법, 조직, 정보 및 협력시스템 등을 포괄한다.¹¹⁾ 아래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 방지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법규와 방지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국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관

가. 국제규범

불과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자금세탁은 몇몇 국가의 국내적 관심사에 불과하였다. 1970년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을 통해 자금세탁을

9) 정 응,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른 불법위험과 사이버 경제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2호, 2008, 155면.

10) "The process of disguising the illegal origin of funds in order to make them appear legitimate"(조직범죄에 관한 미국 대통령 위원회, 1985). 이 용어는 1920년대 ‘알 카포네’와 같은 조직범죄자들이 도박이나 불법 주류판매를 통한 수입금을 현금거래가 빈번한 세탁소(laundry)의 합법적 수입으로 가장한 것으로부터 유래하였다고 한다.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 2007. 12, 3면.

11)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도 본 연구와 거의 유사한 시각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 소개”, <http://www.kofiu.go.kr>(검색일: 2011. 11. 20)

최초로 규제한 미국을 필두로, 일부 영미법계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규제를 실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세계금융경제의 자유화, 통합화 현상은 광범한 지역에 걸친 자금세탁의 국제적 속성을 두드러지게 하였고 1980년대 말에는 국제적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높이게 하였다.

그 결과 1988년 12월 UN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협약(일명 비엔나협약)과 BIS 산하 바젤위원회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었으며, 1989년 7월에 G-7의 결의로 자금세탁에 관한 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이하 FATF)가 설치되어 1990년 자금세탁규제를 위한 40개 사항을 권고하였다. 또 1991년에는 유럽공동체(EC)도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한 바 있다.

1) 1988년 UN 협약(비엔나협약)

일명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이라고 불리는 동 협약의 정식명칭은 ‘1988년 마약 및 향정신물질의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1988)’이다.

이 협약은 UN이 마약류의 불법거래에 대처하기 위해 비엔나 회담에서 채택한 것으로 총 3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제3조와 제5조이다. 제3조는 약물과 관련된 주요한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처벌을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제5조는 수익의 형태가 변하였거나, 합법자금에 혼입된 경우라도 추적 및 확인이 가능한 경우 당해 수익을 반드시 동결하고 몰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포괄적인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불법적 활동에서 생긴 자금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각국이 입법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었음에도, 라틴아메리카지역 등에서 널리 받아

들어졌고 이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 사법제도의 기초 (foundation of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로 인정되고 있다.¹²⁾

2) 바젤위원회 선언

선진국 중앙은행장 모임인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는 1988년 12월 은행이 범죄와 관련되거나 자금세탁을 위한 통로로 사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제도의 범죄적 사용방지에 관한 선언 (Prevention of criminal use of the banking system for the purpose of money-laundering)을 발표하였다.¹³⁾ 바젤위원회 선언은 금융시스템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내부에서 시행해야 할 기본적인 정책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국가가 이를 법제화하거나 금융감독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이후 각국의 금융제도적 조치에서 핵심부분이 되었다. 바젤위원회 선언은 고객신분의 확인,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선언의 준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바젤위원회는 9.11테러사태 이후 2001년 10월 은행의 고객주의의무 지침(Customer due diligence for banks)을 발표하고, 여기서 계좌의 실소유자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¹⁴⁾, 2003년 6월에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를 위한 IAIS과 IOSCO¹⁵⁾와의 공동 제안(Initiatives by the BCBS, IAIS and IOSCO to combat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도 발표한 바 있다.¹⁶⁾

12) 성낙인·권건보, 자금세탁방지법제론, 경인문화사, 2007, 40-47면.

13) BIS, "Basel Committee: Prevention of criminal use of the banking system for the purpose of money-laundering(1988. 12)", <http://www.bis.org/publ/bcbssc137.htm>(검색일: 2011. 8. 25).

14) BIS, "Customer due diligence for banks(2001. 10)", <http://www.bis.org/publ/bcbs85.htm>(검색일: 2009. 11. 25).

15) IAIS는 국제보험감독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OSCO는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16) BIS, "Initiatives by the BCBS, IAIS and IOSCO to combat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2003. 6)", <http://www.bis.org/publ/joint05.htm>(검색일: 2011. 8. 25).

3) FATF 40개 권고사항

FATF는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40개 권고(Forty Recommendation)를 1990년 발표한 이래 권고의 이행을 전세계적으로 촉구해 왔다. 40개 권고사항은 내용상 자금세탁의 범죄화, 수익의 압류·몰수, 국제적인 범죄 수사공조 등 법집행(law enforcement), 고객확인 및 기록유지의무 등 금융부문규제(financial sector regulation)에 관한 권고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한 국제협약과 유사한 영향력을 미쳐왔고,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국제적 기준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날로 발전해가는 자금세탁의 기법과 유형에 대처하고 테러자금의 조달을 규제하기 위해, FATF는 권고사항을 두 차례(1996, 2003)에 걸쳐 개정하고, 또한 2001년 9.1테러 이후 테러자금의 조달과 관련하여 9개항의 특별권고(2001년 8개항, 2004년 1개항)를 추가한 바 있다(<표 3>).

<표 3> FATF 40+9 권고사항 제정 연혁

년도	내 용
1990	마약자금세탁을 억제하기 위한 40개 권고사항 제정
1996	마약자금뿐만 아니라 중요범죄로 범위 확대
2001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긴급총회에서 ‘특별권고사항’ 8개항 합의. - 관련 UN 협약의 즉각적인 비준 및 이행, 테러관련 혐의거래보고, 대체송금제도에 대한 규제, 전신송금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등
2003	자금세탁기법의 발달 및 9.11 사태에 따른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 권고사항 발표 - 자금세탁 처벌범위 확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의무 강화
2004	특별권고사항에 현금휴대반출입 규제와 관련한 1개항 추가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 소개”, <http://www.kofiu.go.kr>(검색일: 2011. 11. 20).

그 결과 현재 FATF의 40+9 권고사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규범으로 발전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처하기 위한 사법제도, 금융시스템 및 규제, 국제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권고내용을 담게 되었다. 동 권고사항은 구속력이 있는 다자협약은 아니지만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지정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다.

나. 국제기구

1) FATF

자금세탁 관련 국제기구 가운데 현재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FATF라 할 것이다. 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하여 Task Force를 설립키로 합의함에 따라 출범했으며, 1990년 40개 권고사항을 발표한 이래 권고의 이행을 전세계적으로 촉구하는 등 지금까지 자금세탁에 관한 국제적 활동을 주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11년 5월 현재 우리나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4개 국가와 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표 4>).

FATF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연차별 자기평가와 정기적 상호평가를 통해 FATF의 권고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11.3 - 2008.11.14 기간 중 미국·스페인·일본 등 5개국 7명의 금융·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이 우리 정부 부처 및 금융기관 면담 등을 통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¹⁷⁾ 제도 및 운영현황을 정밀하게 점검하였으며, 이러한 2주간에 걸친 방문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이행

17) AML-CFT: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실태에 관한 상호평가 보고서(mutual evaluation report)가 작성된 바 있다.¹⁸⁾

<표 4> FATF 회원 현황(2011. 5월 현재)

	회원 국가	회원 국제기구
유럽 (20)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19)	EC (European Commission)
미주 기타 (7)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아·태(9)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	
계 (36)	34	2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 소개”, <http://www.kofiu.go.kr>(검색일: 2011. 11. 20).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제도 이행 점검과 함께 비회원국 중 비협조국(Non-Cooperative Countries or Territories: NCCT)을 가려내기 위해 지난 2000년 2월 25개의 NCCT 기준을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매년 비협조국을 공표하고 있다.

현재 FATF 40+9 권고사항은 전세계 약 170여개국에서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는 바,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 비회원국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지정 등을 통하여 영향력을 미치면서 전세계에 걸친 정책적 공조체제를 유도하고 있다.

2) Egmont Group

에그몽그룹(Egmont Group)은 각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간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FIU의 신

18) FATF, “Mutual Eval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fatf-gafi.org/document/9/0,3343,en_32250379_32236963_43303881_1_1_1_1,00.html (검색일: 2011. 8. 25).

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6월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미국, 영국, 벨기에 등이 주축이 되어 13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으며, 2011년 11월 현재 116개국 FIU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gmont Group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FIU 설립 장려, 정보교환 촉진, 훈련 프로그램·워크숍·인적교류 촉진, 실무그룹 확대, 정보 교환을 위한 적절한 양식 개발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6월 모나코 총회에서 Egmont Group 회원 가입이 승인되었으며, 이후 매년 연차총회 및 FIU 원장회의와 1년에 3차례 개최되는 각종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회의에 참여하여 FIU 간의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2008년 5월에는 Egmont Group 16차 연차총회를 가 5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각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¹⁹⁾

3) APG

아-태 자금세탁방지기구(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APG)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아·태지역 국가간 협조를 위해 1998년 3월 설립되었다. 2011년 11월 현재 총 36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부터 APG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PG는 FATF 평가방법론에 의거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이행현황을 모니터 하는 등 역내 국제기준 이행 및 국제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APG 공동의장국을 역임하였고 APG 연차총회를 의장국에서 개최하는 관행에 따라 우리나라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주관이 되어 2004년 6월 APG 제7차 연차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²⁰⁾

19)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 소개”, <http://www.kofiu.go.kr>(검색일: 2011. 11. 20).

20) 위의 자료.

2.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과 최근 동향

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관련 법률 제정과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의 출범으로 시작되었다. 즉, 2001년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규제법)이 의결되고, 곧이어 같은 달 27일 공포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을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그 해 11월 28일 동 법률이 시행됨과 동시에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한 정부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출범하였다.

자금세탁행위는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금세탁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이 절대적으로 요망되고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우선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다음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금세탁정보를 법집행기관 등에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제정 당시 ①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②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게 되었다.²¹⁾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2001년 제정 이래 2004. 1. 20일 동 시행령 개정으로 혐의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기준금액이 한 차례 하향 조정된 바 있고, 2005. 1. 17일 동 법률 개정으로 고액현금보고(CRT,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및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²²⁾가 도입됨으로써(각 1년간 유예기간

21)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 2007. 12, 16면.

22) 우리나라 고객확인제도는 그 동안 금융실명법에 의거하여 고객의 기본적인 신원을 확인해 왔으나 FATF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는 미흡하였다. 고객확인제도는 FATF의 핵심 권고사항의 하나

후 시행) STR, CRT, CDD로 이루어진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제도의 3대 축이 완성되었다.

2)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최근 동향

2006년 시행된 고객확인제도는 2007년 12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하여 최근 더욱 강화되는 추세 있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는 기존 고객확인에 더하여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유형에 따라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확인절차를 업무지침으로 운용하도록 한 것으로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2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2월부터 비금융기관으로서 자금세탁 위험이 큰 카지노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카지노의 영업환경에 맞춰 STR, CRT, CDD 등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원화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5억원 미만의 조세부정환급도 포함)의 경우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자금세탁방지 강화추세에 관련하여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역시 마련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을 2007년 12월 21일 제정, 공포하였다. 동법에서는 입법목적이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있음을 명시하면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유형의 폭력행위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집·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로서 2003년 IMF/World Bank FASF 등에서도 그 이행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고객확인 의무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및 고시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범죄를 명문화하였다.²³⁾ 이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UN 협약, 2004년 2월 17일 우리나라 국회 비준)의 이행을 위한 국내 제도가 정비되었다. 또한 2007년 12월 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한 혐의거래보고 대상의 범위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상의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로 확대하였다.

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법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5011호, 1995.12.6 제정), 범죄수익규제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등 4종류가 있다. 이처럼 법제가 다원화된 이유는 각 법률이 다루는 특정의 고유 영역이 일부 존재하도록 제도가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자금세탁은 범죄수익규제법이 다루는 한편, 금융거래보고체계에 관해서는 범죄수익규제법이 아닌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 다룬다. 또한 마약류불법거래와 관련된 것은 범죄수익규제법이 아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별도로 다룬다.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에 자금세탁행위를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범죄수익규제법은 조직범죄, 거액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자금세탁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FATF 40개 권고사항 제3항에서 보듯이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범죄인으로부터 박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형법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과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만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²⁴⁾ 형법의 몰수규정만으로는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현 범죄수익규제법은 위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대응하여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및 제9조(몰수의 요건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특정범죄에 대한 몰수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정 재산의 몰수에 대체하여 이에 상당한 재산을 몰수하는 소위 대체재산(substitute property) 몰수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따라 범죄수익규제법 제10조에 추정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자금세탁에 대한 형사처벌적 법제의 정비는 자금세탁 범죄화(criminalization of money laundering)라는 국제적 규준 혹은 제도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금세탁 범죄화제도란, 비엔나협약(1988)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자금세탁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²⁵⁾ 자금세탁 범죄는 세탁된 자금이 지정된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s)로부터 얻어진 불법자산으로, 그 범죄수익을 은닉, 가장하는 등 범죄수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생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제범죄가 처벌되어야 자금세탁 범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세탁 범죄 그 자체가 전제범죄와 별개로 중형으로 처

24)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호.

25) 자금세탁 범죄화제도는 1988년 UN이 제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에서 잘 정의하고 있는 바, 이 협약에 의하면 각국은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i) 당해 자산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법적 책임을 면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해당 자산을 전환 또는 양도하는 행위, (ii) 당해 자산의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권리·소유권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iii) 당해 자산을 취득·소지·사용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범죄화 하고 법률에 의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세계 18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표준이 되고 있다.

벌되도록 하는 것이 자금세탁 범죄화제도의 핵심이다.

FATF는 각국이 자금세탁 범죄화를 위한 전제범죄의 범위를 범죄목록으로 나열하는 방식(나열식 접근법, list approach), 일정 형량 이상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기준식 접근법, threshold approach), 또는 이를 혼용한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와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나열식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나열식 접근법을 택하여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2001년 출범 당시 38종 범죄를 지정한 후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즉 뇌물수수·공여죄, 사기·횡령·배임죄, 저작권법 위반범죄,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범죄,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위반범죄 등을 추가함으로써 현재는 총 44종 범죄를 자금세탁 전제범죄로 지정하고 있다.²⁶⁾

다. 자금세탁방지 조직과 절차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조직의 핵심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라 할 것이다.²⁷⁾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국세청·관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금세탁과 연계된 금융정보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법집행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자금세탁관련 금융정보를 금융회사에서 제공받아 심사분석한 후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KoFIU로부터 자금세탁행위 또는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자료를 제공받는 법집행기관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선관위 등 6개 기관이다.²⁸⁾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 보

26)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 소개”, <http://www.kofiu.go.kr>(검색일: 2011. 11. 20).

27)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년 11월 설립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이관되고, 그 업무 또한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영역까지 확대되었다.

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외국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조직체계는 KoFIU를 중심으로 하되 넓은 의미로는 금융기관, 법집행기관, 외국 FIU 등이 그 주요 행위자(player)로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oFIU가 자금세탁방지 조직체계의 중심이 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STR, CTR 등을 통해 자금세탁 관련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전체적인 절차와 흐름의 개요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KoFIU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http://www.kofiu.go.kr>(검색일: 2011. 11. 20).

28)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이후 법집행기관에 총 20,873건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중 종결된 사건은 10,220건이며, 2009년 12월 말 현재 4,817건이 자금세탁혐의로 기소, 고발, 추정되어 47%의 조치율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2009년도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2010. 11, p. 75.

IV. 자금세탁의 실태와 대응방향

1. 자금세탁의 유형과 실태

가. 자금세탁 유형

자금세탁은 거래주체와 수법, 국제거래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이중 손쉽게 접근되는 것은 자금세탁 수법에 의한 분류일 것이다. 일찍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실시되었던 나라에서 발표된 자금세탁의 전통적 수법 중에는 ① 도박사업장을 통한 수법, ② 무역거래를 이용한 수법, ③ 대체송금시스템을 이용한 수법 등이 있다.²⁹⁾ 우선 카지노와 경마장, 도박장(betting shop) 등 도박관련 사업은 명백한 근거가 없어도 최근에 얻은 재산에 대해 변명(ready-made excuse)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 자금세탁 수법으로 잘 이용되어 오고 있다. 무역거래를 이용한 수법은 결제가격 조작의 간편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자금세탁에 자주 이용된다. 대체송금시스템(alternative remittance system)은 공식적 은행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고객을 대신하여 국가 간에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 이용을 꺼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도 금융권 밖에서 송금을 대행하여 주는 영업활동은 19세기 서구 은행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있어 왔고³⁰⁾ 우리나라는 환치기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환치기업자는 외환거래제도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외국 송금회사와 연계되어 대체송금을 한다.

한편 에그몽그룹(Egmont Group)이 출범 5주년을 맞아 지난 2000년 자금세탁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분석된 자금세탁 유형이 있다. 여기서 제시된 자금세탁의 유형은 ① 비즈니스구조 내에 은닉한 경우, ② 적법한 비

29)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 2007. 12, 7면.

30) 역사적, 민족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대체송금시스템은 미국의 BMPE(Black Market Peso Exchange), 인도의 훈디·하왈라(Hundi·Hawala), 중국의 칫·참샵(Chit·ChopShop)이 대표적이다.

즈니스를 악용하는 경우, ③ 신분위조·문서위조 및 대리인물을 사용하는 경우, ④ 국가간의 상이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⑤ 익명자산형태를 이용하는 경우 등 다섯 가지이다.³¹⁾

에그몽그룹이 제시한 5대 분류 유형에서 우선 비즈니스구조 이용은 범죄자가 운영 내지 조종하는 현존 사업체 또는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 안에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방식이다. 자금세탁 범죄자들은 관련 사업체나 회사를 직접적인 소유 또는 실소유주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고액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나이트클럽과 음식점 등 다수의 사업체는 주로 현금을 다루기 때문에 고액현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지더라도 혐의를 덜 갖는다. 아울러 자금세탁 범죄자는 회사의 소유구조를 통해 은닉이 가능하다. 회사설립비용이 어떤 국가에서는 수백 달러면 가능하고 경험이 부족한 범죄자라도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도와주는 회사설립 대리인이 세계적으로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체 및 회사는 자금세탁을 행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본 유형은 자금세탁관련 범죄자가 매우 선호하는 방식이다. 비즈니스구조 이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진위회사, 유명회사를 들 수 있다.

FATF가 최근 발표한 스포츠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역시 비즈니스구조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FATF는 2009년 7월 보고서(*Money Laundering through the Football Sector*)를 통해 스포츠산업 부문에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³²⁾

즉 축구와 같은 경우는 지난 수십년간 단순한 대중스포츠에서 글로벌 산업으로 변화하여 투자금이 유입되었고 그 중 일부분은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축구가 10억 이상의 관중을 끌어 모으는 세계 최대의

31) Egmont Group(2000), *100 Cases from the Egmont Group*. 이 사례집은 에그몽그룹 회원국들로부터 수집된 100가지 자금세탁 사례로서 국제거래와 관련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안형도·윤덕룡, 앞의 책, 75-79면.

32) FATF, *Money Laundering through the Football Sector*, http://www.fatf-gafi.org/document/20/0,3746,en_32250379_32237202_43216660_1_1_1_1,00.html(검색일: 2011. 11. 20).

스포츠로 성장하였으나, 축구에 대한 규제구조는 아직까지 이러한 변화와 그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정부정책당국과 스포츠규제당국은 축구산업이 범죄자에 의해 이용될 위험성을 이해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적법비즈니스 악용의 유형은 해당 사업체나 기업이 불법자금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금세탁 과정에 이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사업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금세탁에 이용함으로써 외면적으로는 범죄자금이 범죄자가 아닌 기업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범죄자들은 범죄자금이 신뢰도를 갖기 바라기 때문에, 이들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이들의 사회적 신뢰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닉하고자 하는 것이다. 적법비즈니스 악용에 있어서는 법률회사, 일반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법인이 이용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코레스뱅크, 프라이빗뱅크 등이 자금세탁에 취약하다.

셋째, 신분위조·문서위조·대리인물을 이용하는 유형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자금세탁방지법을 도입하고 FIU를 설립함으로써 자금세탁의 예방과 범죄수사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따라서 자금세탁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계좌 개설이나 거래 시의 신분위조는 자산과 범죄자와의 연계를 제거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법으로 가명계좌가 대표적이다. 문서위조는 사기행위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을 위한 허위 사실을 꾸미는데 이용된다. 자금의 정당성을 금융기관에 입증하기 위해 물품명세서, 영수증, 여행관련 서류 등의 위조가 행해지고 있다. 대리인물의 이용은 범죄조직과의 연계를 최소화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이 특정금융거래에 혐의를 갖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가치를 반감시킬 수 있다. 차명계좌의 이용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넷째, 국가간 제도의 차이를 이용하는 유형이다. 자금세탁 범죄자들은

은행법, 신원확인 기준, 정보공개 기준, 세법, 회사설립 기준, 외환규제 등에 있어서 각국의 법체계와 규제의 차이를 이용한다. 자금세탁 범죄자들은 법체계의 상이함에 부가하여 언어장벽, 가용정보의 제한, 해외조사 수행시의 고비용 등의 문제가 범죄수사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범죄수사에 대해 국가간의 정보교환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범죄자들이 범죄의 흔적을 제거하거나 도주할 시간을 제공한다. 금융서비스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범죄자들은 점점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국외로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수사의 비용과 시간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가간 제도의 차이를 이용한 수법으로는 조세피난처 이용, 복수국가의 은행계좌 이용, 외국의 비거주자계좌 이용 등이 있다.

다섯째, 익명자산형태를 이용하는 유형이다. 어떤 자산형태는 그 성질상 익명성을 띠고 있어서 현행법을 잡지 않는 한 실소유권이나 자금의 원천을 밝히기가 불가능하다. 익명자산을 이용하는 경우 범죄의 흔적이 적기 때문에 범죄와 자산의 연계성을 포착하거나 증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데, 자금세탁범죄자들은 이 점을 이용한다. 익명자산의 대표적 케이스는 현금이며 그 외에도 무기명 유가증권, 고가의 소비용품, 보석류, 귀금속 등이 있다. 익명자산의 형태는 마약거래에 있어서의 현금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잘 나타나는데 마약거래자들은 현금을 절대적으로 선호한다.

나. 자금세탁 실태

에그몽그룹이 제시한 5대 분류 기준에 따라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외국 자금세탁 사례를 살펴보면³³⁾ 비즈니스구조 이용 20건, 적법비즈니스 악

33) 에그몽그룹이 발표한 사례 중 국제거래와 관련된 외국사례는 총 49건이다. 이하 국내외 사례분석 자료는 안형도·윤덕룡, 앞의 책, 79-83면 참조.

용 8건, 신분위조 등 이용 6건,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5건, 익명자산 형태 이용이 10건으로 나타내고 있다. 비즈니스구조와 익명자산형태 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전위회사의 이용, 현금 등의 이용이 자금세탁자들에게 선호되는 방법임을 보여준다. 또한 전반적으로 불법 사업체와 기업을 이용하는 방법이 28건으로 자금세탁 범죄자들이 사업체나 기업을 이용 또는 악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5대 분류기준에 따른 자금세탁수법을 구체적으로 보면³⁴⁾, 비즈니스구조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총 20건 중 전위회사가 16건, 유령회사가 4건이 관찰되고 있다. 적법비즈니스 악용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서류)이용 4건, 법률회사(계좌·명의)이용 2건, 회사이용 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분위조 등과 관련하여서는 신분서류위조가 5건, 가차명계좌 이용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에 있어서는 조세피난처 이용이 1건, 복수국가의 은행계좌 이용 3건, 외국의 비거주자계좌 이용 1건이 보고되고 있다. 익명자산형태의 이용에 있어서는 총 10건 중 전신환 이용 1건, 거액현금입금 3건, 거액현금 환전 3건, 거액현금으로 상품구입이 2건, 금매입 1건을 차지하고 있다.

에그몽그룹의 분류기준에 비추어 보면 비즈니스구조 이용에 있어서는 전위회사 이용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적법비즈니스 악용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기관과 법률회사, 일반회사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신분위조 등에 있어서는 신분 및 서류위조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국가간 제도 차이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외국의 은행계좌를 통해 입출금 및 송금하는 수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익명자산형태의 이용에서는 거액 현금의 입출금, 환전, 고액상품구입 등이 관찰된다.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사례를 살펴보면³⁵⁾ 비즈니스구조 이용이 12건,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이 10건, 신분위조 등이 5

34) 하나의 사례에서 다수 자금세탁수법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수법만을 빈도수 계산에 사용.

35) 1995~2002년간 형사사법기관 등에서 수집된 국제거래 관련 국내 사례 31건.

건, 익명자산형태 이용이 3건, 적법비즈니스 이용이 1건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사례에서는 비즈니스구조 이용과 국가간제도 차이의 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사례의 경우 비즈니스구조 이용 외에 익명자산형태 이용이 대종을 이루는 것과 비교된다.

자금세탁수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비즈니스구조 은닉에 있어서는 총 12건 중전위회사가 7건, 유명회사가 5건이며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의 경우에는 총 10건 중 용역비 해외수령 3건, 역외펀드 이용 3건, 환치기가 3건, 증권매매대금 미반입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분위조 등의 경우 총 5건 중 대리인물 이용 2건, 서류위조 2건, 신분위조 1건 등이 관찰되며 익명자산 형태 이용의 경우에는 외화송금수표 이용, 전신송금 및 휴대반출, 여행자 수표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은 비즈니스구조에의 은닉 일환으로 전위회사와 유명회사가 자금세탁에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사례의 추세와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에 관하여는 용역비 해외수령, 역외펀드 이용, 환치기가 자주 관찰되는데 이는 외국사례의 경우 외국의 은행계좌를 통한 입출금 및 송금이 이용되는 것과 비교된다.

이처럼 국가간 제도의 차이와 비즈니스구조를 이용한 국내 자금세탁의 추세적 특징은 위의 분석시기 이후에도 최근까지 환치기 등에 의한 불법거래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되고 있다. 관세청에 의한 주요 환치기 단속사례로는 2004년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4,30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 조직 검거사건이 있었으며³⁶⁾ 지난 2008년에도 차명계좌를

36) 관세청 서울세관은 2004년 5월 28일 47,000여명이 입출금한 51개의 환치기 계좌로 4,30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알선하고 총 21억원 상당의 불법 수수료를 받은 대형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 주범 조모씨 등은 호주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친·인척 등의 명의로 환치기계좌 총 51개를 개설하여 1998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09,872회에 걸쳐 건당 5-20불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무역대금 및 재산도피성자금 등에 대한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알선해 왔으며, 특히 박모씨는 상기 환치기 계좌를 운용하여 얻은 수수료 4억원 상당을 증여성 송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을 호주로 도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관세청 보도자료, 2004. 5. 31). 관세청의 외환사범 단속에서는 이러한 대형 사건 외에도 무역회사대표(총책)·환전상(불법환전 담당)·보따리무역상 대표(세관신고 면제금액 이하로

이용한 환치기(9,600억원) 사건이 있었다(관세청 보도자료, 2009. 2. 29). 비즈니스구조를 이용한 사례로는 상장기업·코스닥 등록기업 등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여,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고가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재산을 도피한 사건이 있었고(관세청 보도자료, 2005. 6. 22), 2008년에도 역시 무역거래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180억원) 사건이 있었다(관세청 보도자료, 2009. 2. 29). 이밖에 경찰청의 단속사례로는 필리핀으로 약 527억원의 외화를 유출한 환전상·무역업자 등 환치기사범 적발(구속 1, 불구속 48, 수배 2) 사건이 있다(경찰청 보도자료, 2004. 9. 16).

우리나라의 자금세탁의 실태를 금융정보분석원이 범집행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 6개)에 제공한 자금세탁 정보를 통해 보면, 전제범죄의 유형 측면에서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외국환범죄가 2007년 34%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외국환범죄 유형의 자금세탁은 2008년 24%, 2009년 14%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조세범죄에 의한 자금세탁 다음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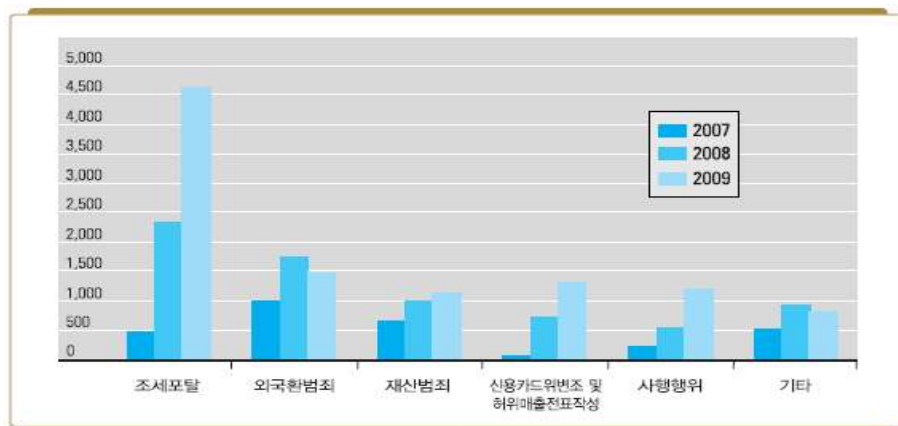
분산 휴대반출할 운반책 모집담당) 등이 낀 신종환치기 사례도 관찰된다.

<표 5>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범죄유형

단위: 건

범죄유형	2007		2008		2009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조세범죄(조세부정환급 등)	454	16%	2,352	33%	4,645	44%
외국환범죄(무등록외국환업무 등)	963	34%	1,719	24%	1,436	14%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	635	22%	985	14%	1,118	11%
신용카드범죄	61	0%	681	19%	1,309	12%
사행행위(게임물이용상습도박등)	224	8%	522	7%	1,182	11%
기 타	492	17%	905	13%	812	8%
총 계	2,825	100%	7,164	100%	10,502	100%

주: 1) 복수제공건 포함 (순 제공건수는 2008년 5,234건, 2009년 7,711건)
 2) 조세범죄는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한 조세포탈, 부정환급
 3) 외국환범죄는 밀수출입(관세법위반), 수출입가격 조작, 재산 국외도피, 관세포탈 등
 4) 재산범죄는 대부분 사기·횡령·배임. 2008년의 경우 985건 중 969건
 5) 신용카드범죄는 카드 위변조, 무허가·무등록 카드업 행위, 매출전표 허위작성 등
 6) 사행행위는 도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위반 등
 7) 기타는 공정중서원본 부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 행사 및 금융회사직원의 수재, 공무원 뇌물수수 등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2009년도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2010. 11.



2. 제도적 대응방향

가. 자금세탁 관련법규의 정비

첫째, 자금세탁의 위험(risk) 방지를 위해 2007년 12월에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보고법 등 AML-CFT 관련된 국내 법령들이 향후에도 보다 강화되어 갈 필요가 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도입되거나 보완·강화되는 제도들은 FATF 등에서 그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 법제도의 도입은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국제사회로부터 불법자금억제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범죄조직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방조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과의 협조 하에 효과적 자금세탁 통제체제를 제도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8월 FATF의 우리나라 AML-CFT 제도이행 실태에 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도 2008년에 테러자금조달 차단 제도 도입³⁷⁾ 및 자금세탁 방지제도 강화³⁸⁾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향후 자금세탁 위험을 보다 감소시켜가기 위해서는 혐의거래 보고기준 금액이 낮추어질 필요가 있고, 특히 고액현금거래가 감시되어야 한다.³⁹⁾ 현금은 대표적 익명성 자산으로서 손쉽게 자금세탁에 이용되기 때문에 고액거래의 감시를 통해 현금거래의 비중을 감소시켜 금융거래를 점진적으로 투명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7)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2008.12.22)으로 Al-Qaeda, Taliban 등 공중협박자금조달(Terrorist Financing)관련자 974명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38)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시 자금출처·사용목적 등을 확인토록 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 Enhanced Due Diligence) 도입.

39) FATF도 2009년 당시 우리나라의 현 STR 제도가 2천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는 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에 따라 2010년 6월 30일부터 STR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CTR 역시 2006년 도입 당시 보고 기준금액이 5천만원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단계적 인하, 운영되고 있다.

둘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내 법규들이 금융기관 등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감독규정 또한 정비되어야 한다.

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금융기관 스스로 고객유형(외국인, 카지노 사업자 등) 및 거래유형(프라이빗 बैं킹 등)에 따라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차등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적용토록 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과거 금융기관은 고객 또는 거래유형에 대한 구별 없이 고객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위험이 큰 고객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객확인을 하거나 위험이 적은 고객에 대해서는 단순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적용하는 등 고객의 위험과 금융기관의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적절한 제도 운용에 애로가 있었다.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일반적인 신원확인 및 검증보다는 강화된 절차와 내용으로 금융기관 스스로 업무지침을 정하여 고객을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목적달성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차등화된 고객주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기준으로 고객 및 거래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도를 측정하는가의 문제와 위험도에 따라서 어떻게 차등화된 고객주의 의무를 적용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세부 사항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10-1호, 2010.7.30 시행)을 시행하고 있는 바, 각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위험평가, 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등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실효적으로 조사·감독할 수 있는 세부감독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금세탁방지 법제 이행의 효율적 안착을 위해서는 불법자금의 조달과 이동 등 탈법위험성이 높은 분야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또한 고의적 법규 위반(willful violation)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에 의해 그 제재를 엄격히 하되, 한편으로 법규준수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감독 및 검사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규정들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에 상응하여 법규준수 기관

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이 등 구조화된 유인체계(structured incentive system)를 갖추으로써 자금세탁 대응체계의 제도화를 안착시켜가야 할 것이다.

나. 자금세탁방지 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FATF 정회원(full membership) 가입하였으며, 자금세탁방지 중추 기관으로서 국내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을 자금세탁방지의 중심 기관으로 운영하되 자금세탁의 실효적 통제와 그 제도화 차원에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된 협력체계를 구축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주요국 FIU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립 이래 주요국 FIU와의 MOU 체결을 꾸준히 확대하여, 2002년 네델란드 및 영국을 시작으로 2009년에도 터키, 싱가포르, 버뮤다, 방글라데시 등 4개국의 FIU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2009년 말 현재 총 43개국 FIU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⁴⁰⁾ 그간 체결 대상국 선정에는 상대방 국내법상 정보교환을 위한 MOU 필요 여부, 자금세탁 위험성, 우리나라와의 거래 규모 등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 향후에도 외국 FIU와 MOU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 주요국 외에도 특히 최근 우리나라와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양해각서 체결과 정례적 정보교류에도 주목해야 한다.

둘째, 국제적 협력관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국내 유관기관 및 법집행기관, 금융회사 간 강력한 파트너십에 기초한 상호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체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집행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회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으

40) 금융정보분석원, 2009년도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2010. 11, 21면.

로 요구되는바,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정례적으로 제도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민관파트너십(PPP : Private-Public Partnership) 내지 관계자간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의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준상설기구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국제금융거래에서의 탈법위험과 비용 최소화를 위해 집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불법행위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성(accuracy), 적시성(timeliness)을 갖추어 수집(collection), 생산(production), 배포(dissemination) 해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마련이다. 단기적인 불법행위 차단과 단속활동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판단에 기초한 미래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은 FIU정보시스템(GOOD FINDER)⁴¹⁾를 자금세탁방지 관련 유관기관들의 정보시스템 즉, 전략물자관리원의 관리정보시스템인 예스트레이드(yestrade.go.kr), 경찰청의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 Crime Intelligence Analysis System), 관세청의 통합정보시스템(CDW, Customs Data Warehouse)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자금세탁 위험관리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다. 자금세탁방지 홍보·교육활동의 강화

자금세탁범죄자가 경제적 수익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합법적 행동이 아닌 불법적 행동을 선택할 경우 그 불법행동은 처벌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 때문에 위험성을 갖게 되는 바, 여기서 범죄자가 고려하는

41) FIU정보시스템은 크게 특정금융정보 관리시스템과 정보분석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입수된 혐의거래 정보를 분석하고 신속하게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금세탁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벌확률(probability of punishment)은 객관적인 확률이 아니라 범죄자가 기대하는 주관적 확률(subjective probability)이다. 따라서 지속적 자금세탁방지 홍보·교육을 통해 범죄의 처벌비용과 당국의 차단의지를 잠재적 범죄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범죄수익을 노린 불법행동을 억제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자금세탁범죄는 일반 경제범죄와 달리 그 직접적인 피해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시민과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과 국가경제질서 훼손에 대한 문제 인식이 높지 못하다. 따라서 자금세탁범죄가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라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질서를 위해하는 범죄이며 반드시 적발·처벌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은 언론매체, 내부교육과정 등을 통해 홍보·교육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법집행 당국에서도 금융회사 및 금융기관, 시민들에게 자금세탁방지과 신고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국제금융시장은 그 시장범주 면에서 외환시장의 통합과 확대, 유로시장의 활성화, 역외금융시장의 신장, 파생금융시장의 성장 등의 변화를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거래경향과 방식에서도 증권화의 심화, 금융겸업화의 증대, 전자금융의 급속한 확산 등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는 비즈니스구조 내 자금 은닉과 비즈니스구조 악용, 문서위조 및 대리인의 이용, 익명자산의 이용 등 기존 자금세탁의 여러 수법들이 더욱 악용·확산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더욱이 최근의 변화는 그 속도가 빠르고 변화내용도 다양하여 불법자금세탁방지를 담당하는 유관 기관들의 선제적 감시와 통제를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논지는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위험-비용 최소화 기본 구상 즉, 국제금융거래에서의 불법위험 최소화를 추구하되, 통제과정에서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안(design), 운용하자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신제도주의 시각에서 자금세탁 관련법규의 정비, 자금세탁방지 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자금세탁방지 홍보·교육활동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강조된 것은 위험관리와 거버넌스적 기조에서의 제도구상이라고 할 것이다.

즉 탈법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고 고의적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되, 저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감시 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법규준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구조화하여 차별적으로 대응토록 한 것이다. 또 자금세탁 통제수요의 증가에 따라 감독기관의 조직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나, 거버넌스적 시각 내지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자금세탁 관련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협력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조직신설 비용, 대리인 비용의 발생을 억제하는 협력통제제도의 구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민간금융기관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참여자들은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금융거래의 규제 또는 장벽으로 이해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탈각하여, 효율적 자금세탁 방지를 통해 불법위험 최소화뿐만 아니라 비용 최소화를 함께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동북아금융 허브로 안착시키도록 하는 능동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관세청, “관세청, 지난 해 5조 3,504억 상당 불법무역사범 적발(보도자료)”, 2009. 2. 29.
-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 2007. 12.
- 금융정보분석원, 2007년도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2008. 6.
- 금융정보분석원, 2009년도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2010. 11.
-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 소개”, <http://www.kofiu.go.kr>(검색일: 2011. 11. 20)
- 법제처, “법령정보검색”, <http://www.moleg.go.kr/main/main.do>(검색일: 2011. 5. 5).
- 사범연수원, 경제범죄론, 2005.
- 성낙인 · 권건보, 자금세탁방지법제론, 경인문화사, 2007.
- 안형도 · 윤덕룡,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정 응, “외환자유화에 따른 탈법위험과 외환범죄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제8권 제1호, 2007, 105-126면.
- 정 응, “FTA 시대 불법무역의 양상과 대책”, 치안정책연구, 제21호, 2007, 75-103면.
- 정 응,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른 불법위험과 사이버 경제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2호, 2008, 145-169면.
- 정 응, “국제금융거래에서의 탈법위험과 대응과제”, 국제금융위험관리, 제10권 제3호, 2009, 113-150면.
- 정 응,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자금세탁위험과 제도적 대응방향”, 한국무역

보험학회 2011년 국제학술회의, 2011. 6. 17.

한국은행, “BIS의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시장 거래규모 조사결과(보
도자료)”, 2007. 9. 28.

한국은행, “BIS의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시장 거래규모 조사결과(보
도자료)”, 2010. 9. 1.

2. 외국문헌

Becker, Gary G.,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6, No. 2, 1968, pp.
169-217.

BIS, “Basel Committee: Prevention of criminal use of the banking
system for the purpose of money-laundering(1988. 12)”,
<http://www.bis.org/publ/bcbsc137.htm>(검색일: 2011. 8. 25).

BIS, “Customer due diligence for banks(2001. 10)”, [http://www.
bis.org/publ/bcbs85.htm](http://www.bis.org/publ/bcbs85.htm)(검색일: 2011. 8. 25).

BIS, “Initiatives by the BCBS, IAIS and IOSCO to combat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2003. 6)”, [http://
www.bis.org/publ/joint05.htm](http://www.bis.org/publ/joint05.htm)(검색일: 2011. 8. 25).

Eggertsson, T., *Economic Behavior and Instit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Eide Erling, Paul H. Rubin, and Joanna M. Shepherd, *Economics of
Crime*, Hanover: now Publishers Inc., 2006.

FATF, “Mutual Eval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
fatf-gafi.org/document/9/0,3343,en_32250379_32236963_43303881_
1_1_1_1,00.html](http://www.fatf-gafi.org/document/9/0,3343,en_32250379_32236963_43303881_1_1_1_1,00.html)(검색일: 2011. 8. 25).

- FATF, *Money Laundering through the Football Sector*(2009. 7),
http://www.fatf-gafi.org/document/20/0,3746,en_32250379_32237202_43216660_1_1_1_1,00.html(검색일: 2011. 11. 20)
- North, D. C.,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Ostrom, E., “An Agenda for the Study of Institutions”, *Public Choice*, 48, 1986, pp. 3-25.
- Williamson, Oliver E.,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New York: Free Press, 1985.
- Winter H., *The Economics of Crime: An introduction to rational crime analysis*, New York: Routledge, 2008.

책임연구보고서 2011-17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자금세탁 위험과 대책

2011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인 : 한 광 일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